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20
------	------

발의일자 : 2025. 5. 29.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의원

1. 제안이유

예방접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외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예방접종 종류, 대상,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예방접종업무 위탁, 비용 상환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바. 예방접종 피해보상 및 준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폐지

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64조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5. 5. 30. ~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방접종의 종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6조(예방접종 대상)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예방접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감염병 재난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구민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③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는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7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후조리도우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마을 버스,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
5.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7. 환경공무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 포함)
8.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6조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④ 제6조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 지원한다.

제8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① 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10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접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과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2023. 3. 28., 2023. 6. 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

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6. 13.>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8. 12., 2020. 9. 29., 2023. 6. 13.>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3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3., 2023. 8. 18.>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23. 8. 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18. 9. 18., 2019. 7. 9., 2020. 6. 2., 2020. 9. 11.>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